

증평군 지능정보화 조례 [전부개정 2013. 2. 22]

조례 제420호

일부개정 2013. 11. 8 조례 제 506호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)

일부개정 2015. 1. 1 조례 제 559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17. 12. 28 조례 제 79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일부개정 2022. 12. 29 조례 제1068호
(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「증평군립도서관
운영 조례」 등 일부개정조례)

전부개정 2024. 4. 5 조례 제1139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 원칙)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
2.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
3. 주민의견 수렴·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
4.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
5.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책

제4조(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 계획에 따라 매년 증평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능정보화책임관) 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

다)을 임명하여야 한다.

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.

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.

제6조(지능정보화의 추진)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, 보건, 산업, 복지, 교육,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, 정보격차 해소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군수는 지능정보화 추진 시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며,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한다.

⑤ 군수는 특정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.

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신기술 제안, 정보화 기획,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, 웹·앱·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

2.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 지능정보화 교육

3. 정보문화 확산 사업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

4. 공공데이터베이스 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

5.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업

6.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 사업

제7조(민간기관 등과의 협력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,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·단체 및

외국의 기관·단체·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8조(지식정보자원의 제공·활용)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·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증평균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9조(지능정보화 교육)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 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·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·장비·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정보문화의 창달)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도한 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「증평균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 및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정보격차의 해소) ① 군수는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정보격차해소 교육 대상자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·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·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·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,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정보보호)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
2.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, 처리, 활용, 폐기 등 전체단계에 걸친 관리
3.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
4.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부칙(2024. 4. 5 조례 제1139호 전부개정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